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407
------------	------

2020년 4월 23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4월 3일, 정지권 의원 외 9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4월 2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지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(자전거의 등록 등)에 명기된 자전거 구매시에는 자치구 등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따른 행정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자전거 등록이 전무한 실정임.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한 자전거주차장(24개소)과 자전거거치대(5209개)의 유지·관리가 부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자전거거치대에 장기간 보관된 무단방치자전거

에 대한 폐기 자체가 어려운게 현실임. 이에따라 시장과 구청장의 책
무에 자전거 등록에 대하여 명기하고 자전거주차장과 거치대는 년1
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자전거주차장과 거치대 주
변의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

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
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
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7항)
-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자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
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
“상시” 점검에서 “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”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변
경함(안 제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4. 13 ~ 2020. 4. 21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) : 원안동의

- 본 조례개정안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명기하고,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하고
-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함을 규정
- 장기 무단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, 연 1회 이상 자전거이용시설의 점검 또한 기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및 보수 주기를 ‘년 1회 이상’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과 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방식¹⁾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

1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(자전거의 등록)

① 읍·면·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.

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

-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 절도 문제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‘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’²⁾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방치자전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방치 자전거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
- 하지만, 현재 서울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자치구(강동구, 양천구, 노원구)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내 자전거 방치문제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됨

〈자치구별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〉

(2020.4 기준)

연번	자치구명	시행년도	등록 자전거 대수	등록 방식	표시방식	소요예산
1	강동구	2014	223	수기	스티커	비예산
2	양천구	2008	36,721	수기	스티커	비예산
3	노원구	2013	37,116	모바일 앱	스티커	3,600천원 (유지관리비)

- 한편,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권한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³⁾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, 시장이 자전거 등록

2) [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] 자전거정책과-2760(2020.3.4.)

3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자전거의 등록 등)

①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(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

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⁴⁾의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⁵⁾을 “년 1회 이상” 정기적으로 점검·보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.

-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,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·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4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5) [서울시 자전거 주차시설] (2019. 12월 기준): 자치구별 자전거 거치대(4,993개소)+기타 기관별 거치대(216개소)+자전거 주차장(24개소)+자전거 보관함(11개소)=전체 5,244개소

	총 계	일반거치대	자전거주차장	자전거보관함
지점(개소)	5,244	5,209	24	11
거치대수(대)	145,384	139,550	5,574	260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상시”를 “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·관리) ① (생략)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차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<u>상시</u>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8조(자전거주차장의 유지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</u> ----- -. ③ (현행과 같음)</p>